

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1. 11

제 출 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2000년 규제개혁 추진에 의거 양수기를 대여 받은 자는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, 선량한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및 시정을 명할 수 있으나, 관리 소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규정이 없으며, 법령에 근거없는 현실성이 없는 규제이므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폐지

2. 주요내용

-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는 읍, 면, 동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 변경되었고 농업기반공사에 배정 보관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- 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를 대여 받은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이므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폐지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

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“ 및 농지개량조합”을 삭제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 3 조(보관) 양수기는 <u>읍,면,동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</u>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. 제 9 조(관리 및 감독) ①<u>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</u> 준수하여야 하며 <u>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.</u> ②<u>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</u>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.	제 3 조(보관) <u>읍,면,동 단위에</u> 【삭 제】